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

2020. 3. 10.

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

<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절차>

구 분	구 분 현장 <u>관</u> 리 업무 내용			
⑦ 의료기관 내 대응조직 구성	· 집중관리의료기관 내 병원장을 포함하여 감염관리실, 진료부서, 간호부서, 행정부서 등으로 구성된 자체 대응팀 구성, 총괄 의사결정	의료기관		
대 격리 범위/ 방법 결정	(격리 범위) · 위험도 평가(확진자의 감염력·활동양상·동선, 접촉자의 범위*·인원 등)를 통한 격리구역(병동, 층, 병실 등) 설정 * 기준: 확진자 임상상태(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), 마스크 착용여부, 체류공간특성(공조, 환기, 구조적 구획구분 등), 체류 시간, 공간의 용도·이동수단 등 (격리 방법) · 확진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,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 (1인 격리, 코호트 구역 격리)	중앙 및 시·도 즉각대응팀		
대 폐쇄 결정	· 감염 전파 위험이 높고,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의료기관 폐쇄(전체/외래, 입원 등 일부) 여부 결정	중앙 및 시·도 즉각대응팀		
래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	· 의료기관 내에서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중 확산에 대비해 의료 공간 조정,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		
	· 위험요인 우선 치단, 의료기관 내 격리 범위와 방법 결정, 격리 대상자 관리 등			
매 집중관리 의료기관 관리	(격리자 관리) · 환자 중 접촉자는 원내 격리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 · 1인 1실 원칙,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코호트 격리 · 발열·호흡기증상·설사증상 여부 모니터링 (2회/일) · 의료진/직원 접촉자는 접촉 강도에 따라 격리와 능동감시 · 격리 구역 출입 시 손위생을 철저히 한 후 환자 진료 · 해당 병동 외 환자진료는 최소화	시·도 대책본부 즉각대응팀, 시·군·구 대책본부, 의료기관		
	·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, 의료기관 격리구역 내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 시 해제 결정			
쓰 진료재개	·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진료 재개 여부 결정 ※ 전체 폐쇄 시 적절한 방역조치 후 노출위험 평가에 따라 일부 폐쇄로 조정하여 일부 진료 재개 가능	즉각대응팀)		

※ 동 안내는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가능

1. 적용 대상

○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확산에 대비해 의료 공간 조정, 일부 폐쇄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(이하 '집중관리의료기관'이라 함)

2. 기본 준비 사항

- (의료기관) 의료기관 시설도면, 확진자 및 노출자(동일 체류장소) 명단 및 의무기록(검사기록 포함), 환자 및 직원 노출자 이동내역(병실이동 포함), 간병인력 및 내원객 목록, CCTV 등
- (관할 보건소) 해당 지역 내 가용 의료자원(의료기관 종별 목록 및 직종별 의료인력 수준, 이송 장비 등) 및 의료물품(개인보호구, 손세정제 등) 보유 현황 파악

3. 의료기관 관리 절차

가. 의료기관 내 대응 조직 구성

○ 집중관리의료기관 내 병원장을 포함하여 감염관리실, 진료부서, 간호부서, 행정부서 등으로 구성된 자체 대응팀 구성

<의료기관 내 대응팀 구성(예시)>

구 분	역할
ril O ᄎ고니	· 의료기관 대책 마련,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내·외부 의사소통 등 총괄 의사결정
대응총괄	· 현장 지휘 총괄(역학조사 및 대응 계획 수립, 역할 분담)
	· 역학조사 계획 수립, 사례 정의 검토, 사례조사
	· 정보 수집·분석(의료진 면담, 의무기록 검토, 재연시험 등)
역학조사팀	· 접촉자·공동 노출자·추가 증상자 조사
	· 환자·접촉자·고위험군 등 관리(치료/격리/추적 관리 등)
	· 인체·환경 검체 채취 등
HICHTITIEI	· 현장통제, 방역조치
방역관리팀	· 주변 환경 소독 위험요인 제거 등
행정지원팀	· 자료관리(자료 정리 등)
	· 환자 및 접촉자 정보 괸 리

나. 격리 범위·방법 결정

○ 집중관리의료기관 내 **격리 범위 및 방법의 결정**은 **즉각대응팀**의 **위험도 평가 기준**을 준용

구분	위험도 평가 기준
	·확진자의 감염력(infectivity, viral load, 증상 또는 징후)은 어느 정도인가?
확진환자	·확진자의 보호구 사용여부(viral shedding 정도)
4024	·확진자의 활동양상, 동선, 입원(체류)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접촉의 범위(공간적 범위)가 얼마나 넓었는가?
I 운기	·타 환자, 가족, 간병인, 의료인 등 접촉자의 범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?
<u>노출</u> 자	·노출된 환자, 재원 중인 환자의 기저질환 및 위중도는 어느 정도인가?
의료기관	·의료기관의 시설, 처치능력, 관리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취약성이 있는가? ·공간적으로 환자의 병실과 근접성, 공조를 같이하는 층 여부

다. 의료기관 폐쇄(전체/일부) 결정

○ (원칙) 의료기관 폐쇄 여부 및 폐쇄 범위는 확진자가 체류한 장소 및 동선의 범위,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및 감염관리 역량 등에 따라 중앙 및 시·도 즉각대응팀에서 판단

○ (검토 사항)

- 환자경유 의료기관 중 소규모 기관(의원급)은 즉각 시설 일시 휴원 우선 검토
- 확진자·접촉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접촉자 다수가 해당 의료기관의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면, **의료기관 일부**를 폐쇄 검토
- 의료기관의 일부 진료실 또는 응급실 운영을 유지하는 등 일부 폐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환자 및 확진자 이송 동선, 의료진 출입구, 구역 등 분리 운영
- 폐쇄 범위 설정 시 노출 및 잠재적 노출가능성을 포함한 최대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 후조사 진행에 따라 범위를 축소(최대범위에서 시작, 노출 여부 확인, 위험 평가 후 해제; stepwised elimination)

라.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

- (목적)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추가 환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,
 의료기관과 관련된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함
 -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기존 인프라(시설·장비·인력 등)를 활용하고 감염관리역량을 집중하여 확진자, 접촉자 등의 격리 및 치료를 수행하는 '집중관리의료기관'으로 지정
- (지정·통지) 의료기관 소재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, 지정권자가 지정사실을 통지*
- (관리) 집중관리의료기관 관리는 시·도 대책본부, 시·군·구 대책본부,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합동 수행, 총괄지휘는 시·도 대책본부(필요시 즉각대응팀 방역관)가 담당

○ (격리방법)

- 격리구역은 확진자가 발생한 구역을 기본으로 하며, 확진자의 동선, 공조시스템, 진료현황,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병동, 층, 병실 등으로 설정

마. 집중관리의료기관 관리

1) 위험요인 우선 차단

- (확진자 격리) 감염방지 조치^{*}를 취한 후, 관할 보건소 또는 시·도 환자관리반(진료과정에 증상 악화 등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)으로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위한 보고
 - * 1인실 격리, 이동 동선 현장 통제,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 등
- ** 확진자의 이송은 현장평가 이전에도 가능
- (의료기관 통제·조사) 의료기관 폐쇄(전체/일부) 등 조치 결정 후 즉시 의료기관 내부 및 외부의 출입을 통제, 환자 역학조사, 접촉자조사 착수(필요시 경찰 협조)
- (1차 방역조치) 확진자가 먼저 확인되어 즉시 격리된 후 의료기관 내부 노출에 대한 역학조사*와 더불어 1차 방역을 시행하여 노출 환경 표면 전반에 대한 소독시행 (붙임 1. 환경소독방법 참고)
 - * 감염원 조사가 중요한 경우 방역관의 현장 통제 하에 환경 검체 등 조사를 충분히 시행 후 조치

2) 접촉자 격리 원칙

○ 노출된 접촉자들(환자, 의료진, 간병 및 보호자 등)을 증상유무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며, 가급적 접촉자 이동을 최소화 함 ○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내 1인 1실 입원을 우선 입원원칙으로 함

단, 해당 의료기관의 병동구조, 감염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코호트 구역 격리 등 감염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 가능

- 타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송 환자 규모에 따라 기 지정된 의료기관(아. 기타 사항 참고)으로 환자 이송 재배치
- 격리 구역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가능한 타 구역 진료 중단
- ㅇ 격리 구역의 병동에는 새로운 환자 입원 중단
- 접촉자 중 의심 중상(발열 또는 호흡기 중상)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환자로 분류하고 격리
- 격리환자 대상 **2회/일 이상, 중상발생**(발열, 호흡기 중상 등)을 **모니터링** 하고 **보건소**에 **결과** 제출(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점검)

3) 의료기관 내 접촉자 격리방법

- 확진자가 체류한 공간, 동선 특징, 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접촉자 격리 시행
- ㅇ 격리자가 전원 격리 해제될 때까지 집중 관리 시행
- 격리 구역을 담당하는 의료진 등은 적절한 개인보호구(표1)를 착용하고 출입하여 접촉 환자 가 전파 가능성 차단

□ 병상 배정 원칙

- 확진 환자가 머무는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 1인실이 원칙
 - 음압병실이 없을 시는 최대한 확진환자가 머무는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다
- ※ (공조시설 기준)일반적으로 외기(30%)와 내기(70%)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,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%로 급기,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
 - 1인실이 없을 시는 일반환자 동선과 완전 분리시킨 병동에 확진환자들에 대해서 다인실 사용 가능
- 의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압 1인실이 원칙이나, 음압1인실 없을 시에는 공조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1인실에 입원 조치
- 음압 병상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은 의료시술 등이 필요한 환자부터 배정
 - ※ 병상배치 우선순위 고위험군
 -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
 - 65세 이상
 - 기저질환(만성폐쇄성폐질환, 심혈관질환 등)이 있는 환자 등

< 확진 환자 병상 배정 예시>

- ① 음압 1인실이 원칙
- ② 음압 1인실 없을 시 음압 다인실 입원
- ③ 음압 다인실 없을 시 일반 1인실 입원
- ④ 일반 1인실 없을 시 일반 다인실 입원(* 환자의 병상간격 3m는 필수사항 아님)
- ⑤ 일반 다인실 없을 시 한층의 모든 병실 이용
- ⑥ 단. 중증 환자는 국가지정격리 병상 음압 1인실 입원
 - 대학병원내 음압병상 분산 수용
- ※ ③, ④. ⑤ 조건
 - (동선) 일반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하므로 확진환자가 일반병실 입원시는 한병동(한층)을 독립적으로 운영
 - (공조시설 기준)일반적으로 외기(30%)와 내기(70%)를 혼합해서 순환시키므로, 공조시설의 개도율을 조정하여 혼합을 막고 외기 100%로 급기,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

4) 의료기관 내 접촉환자 및 접촉의료진 관리

접촉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격리,
 음성인 경우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실시

○ (접촉환자 격리)

- 격리범위 구역에 있는 접촉환자 전체 대상 → 격리대상 확정 후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대상자에게 「격리 통지서」 발부
- 환자는 1인 1실 격리 원칙이나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코호트 구역 격리 등 감염전파 최소화가 가능한 방법으로 격리 실시
- 해당 격리 구역으로 추가적인 환자 입원 및 방문 제한
- 격리 구역 체류 시 모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
- 격리자에 대해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2회/일 모니터링
- 호흡기 증상이 있는 접촉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검사를 의뢰하고, 결과 판정까지 병동 내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 가능(중앙 또는 시도 즉각대응팀 판단)
- 확진자는 치료 가능한 시설(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, 전담병원 및 종합병원 등)로 이송 및 치료

○ (의료진 및 직원 격리)

- 확진자 동선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 및 직원 전체가 대상
- 무증상 밀접접촉자 의료진 및 직원은 자가격리
- 환자와 분리 격리
- 반드시 개인보호구* 착용, 격리 구역 출입 시 손위생을 철저히 한 후 환자 진료

- * 표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 참고 표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및 의사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기준
- 해당 병동 외 환자(외래, 컨설팅 등) 진료 최소화
- 증상 발현 시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음압격리병상 격리
-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및 치료
- 확진자 이송 전까지 진료는 개인보호구 착용 후 가능

○ (접촉자 격리 해제)

- 확진 환자의 접촉자(환자 또는 의료진)는 **격리 13일째 확진검사(코로나바이러스-19 유전자(PCR) 검사)를 시행, 음성**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**격리 해제***, 모니터링 종료
- * (예시) 최종접촉일(4.1일)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.16일 해제(이동가능)
- 격리 해제 시 의료기관은 격리자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장 등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가 연장 가능
- 격리 해제 후 다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장 등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재격리 가능

○ (격리 대상자 관리)

-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격리대상자에게 「격리 통지서」발부
- * 통보 내역을 격리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공유
- 해당 의료기관은 2회/일 이상 격리대상자에 대한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며 그 결과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제출(보건소 점검)
- * 격리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 공유
- 의료기관격리 해제 전일 의료기관에서 해당 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

○ (집중관리의료기관 운영 중 상황보고)

- (집중관리의료기관)

- · 매일 격리대상자 현황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발생 여부,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현황, 현장관리 인력 현황, 기타 특이사항 등 주요 조치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
- 확진자 발생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, 중앙의 방침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
- · 격리대상자 퇴원·퇴실이 결정되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통보
- (의료기관 관할 보건소)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자 현황을 제출받아 접촉자 관리시스템에 입력
- * 단, 의료기관 격리대상자 실거주지는 의료기관 주소로 기입하되,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별도 기록관리

바. 집중관리의료기관 해제

- (해제 결정) 집중관리의료기관 내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, 의료기관의 격리구역 내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 시·도 대책본부(필요시 중앙 즉각대응팀)가 집중관리의료기관 해제 여부를 결정
 - 집중관리의료기관 해제가 결정되면 관할보건소에서는 해제 사실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

사. 진료 재개

- 의료기관은 격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외래, 병동, 응급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격리구역에 대해 진료 재개 전 원내 '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'을 준수하여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
 - 시·도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진료 재개* 여부 결정
 - * 의료기관 내에 종사자 등 의료기관과 관련된 격리대상자가 격리기간 중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며, 격리 구역에 대한 소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, 감염관리 계획 이행 여부 최종 확인
 - 전체 폐쇄 시 방역조치 후 노출위험 평가에 따라 일부 폐쇄로 조정하여 일부 진료 재개 가능
 - 진료 재개는 확진자로부터 노출된 공간에 대한 환경소독을 완료한 시점부터 환기요건(창문의 수와 위치, 기상 등)에 따른 환기횟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

<자연환기 시 환기 횟수와 환기율 및 환기횟수에 따른 비말핵 농도의 감소1)>

▼ 자연환기시 환기횟수 및 환기율

열기 정도	환기횟수(ACH)	환기율(Ventilation rate(I/s)
창문 열기(100%)+출입문 열기	37	1300
창문 열기(50%)+출입문 열기	28	975
창문 열기(100%)+출입문 닫기	4.2	150

▼ 환기율과 시간에 따른 비말핵농도의 감소

	환기횟수(ACH)(%)						
시간(분)	6 12 18 24						
0	100.00	100.00	100.00	100.00			
10	37.00	13.50	4.98	1.83			
20	13.50	1.83	0.25	0.03			
50	0.67	0.00	0.00	0.00			
60	0.25	0.00	0.00	0.00			

ACH, air changes per hour.

(풍속 1m/s, 길이 7m×너비 6m×높이 3m 면적의 방, 창문 1.5×2m², 출입문 1×2m²× 2 m² 조건가정)

¹⁾ Natural Ventilation for Infection Control in Health-Care Settings, WHO, 2009

※ 코로나바이러스의 환경 내 평균 생존반감기는 30분~1시간으로 보고²⁾,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에서 30분 이상 경과 후 1% 미만의 공기만 잔류됨³⁾

아. 기타 사항

1) 의료기관 인력 부족 대비 해당 지역(시도)에서 자원 동원계획 마련

- 지자체별로 의사, 간호사 투입가능 인력 동원 계획을 사전 마련하고 훈련
- * 지역 내 전문가그룹 포함: 감염내과, 감염관리간호사 등
- ** 우선순위: 인근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인력-군의료기관 의료인력-보건소 의료인력
- 2) 환자의 타 의료기관 이송 방법에 대한 계획
- 3) 격리병상과 물품자원 확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조 요청
- 4) 코호트 격리 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, 시도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 민원 관리

5)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 강화
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(병원급 의료기관용)」을 참고하여 철저한 감염예방·관리 시행
- 모든 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감염예방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감염예방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모니터링

²⁾ Stability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(MERS-CoV)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, Eurosurveillance Weekly, 19 September 2013

³⁾ Guidelines for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Health-Care Settings, 2005 MMWR December 30, 2005 / Vol. 54 / No. RR-17

<표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>

	개인보호구						
	호흡기 보호				눈 보호		
상황, 행위	수술용 마스크	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일회용 장갑 ⁴⁾	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	전신 보호복 (덧신포함)	보안경 (또는 안면보호구)
검역(역학조사)		•		•		•	•
선별데스크		•		•	•		
격리진료소 접수, 안내		•		•	•		
격리진료소 진료, 간호		•		•	•		•
이송(구급차 운전자)5)		•		•			
이송(검역관, 보건소직원, 응급구조사 등)		•		•		•	•
구급차 소독		•		•		•	•
의심환자 병실출입, 진료, 간호 등		•		•	•		•
에어로졸 생성 처치(6)				•	•		•
검사(X-ray 등 영상의학검사)				•	•		•
호흡기 검체 채취				•	•		•
검체 취급(실험실, 검사실 등)7)8)		•	•	•	•		•
검체 이송(파손없이 포장된 검체)				•			
사체 이송, 안치		•		•		•	
병실 청소・소독		•		•	•		•
의료폐기물 포장, 취급		•		•	•		•
의료폐기물 운반	•			•	•		

출처;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제7판)(지자체용)(부록8)

⁴⁾ 의심·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, 처치, 간호, 검사,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,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

⁵⁾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(덧신포함),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(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) 착용

⁶⁾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(endotracheal intubation), 심폐소생술, 기관지내시경술, 기도분비물 흡인, 기관관리(tracheostomy care), 사체부검, 비침습적 양압환기(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), 분무요법 (nebulizer therapy),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, 상황, 행위를 말함

⁷⁾ 검체 취급 실험실·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, 사용,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(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)에 따름

⁸⁾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(긴팔),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, Ki C-S, Sung H, et al.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. Infection & chemotherapy. 2016;48(1):61-69.)

<표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환자 및 의사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기준>

역학적 위험요소	노출 위험	권장 모니터링*	무증상 의료진 작업제한
① 개인보호구(보호되지 않은 눈, 코 또는 입) 1) 미착용한 시술 수행의료진 또는 동일 공간 의료진 → 더 높은 농도의 호흡기 분비물 또는 에어로졸 시술 (예 : 심폐 소생술, 삽관, 발관, 기관 지경, 분무기 요법, 객담 유도)을 생성 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수행	높음	기관 모니터링	마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
② 가운, 장갑 미착용한 에어로졸 시술 수행 또는 동일 공간 의료진 → 더 높은 농도의 호흡기 분비물 또는 에어로졸 (예 : 심폐 소생술, 삽관 법, 삽관 법, 기관 지경 검사, 분무기 요법, 객담 유도)을 생성 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수행 참고 : 에어로졸 수행 의료진이 눈, 코 또는 입도 보호되지 않은 경우 ①로 분류	중간	기관 모니터링	마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
③ 개인보호구(보호되지 않은 눈, 코 또는 입) ¹⁾ 미착용 의료진 →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 참고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와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눈이 보호되지 않은 경우 해당	중간	기관 모니터링	마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
④ 개인보호구(보호되지 않은 눈, 코 또는 입) ¹⁾ 미착용 의료진 →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	중간	기관 모니터링	마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
⑤ 장갑 미착용하고 즉각적인 손 위생을 수행하지 못한 의료진 → 환자의 분비물 / 배설물과 직접 접촉 참고 : 접촉 직후 의료진이 손 위생을 수행한 경우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류	중간	기관 모니터링	마지막 노출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
⑥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 →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	낮음	자가 모니터링	_
⑦ 권장되는 모든 보호구(예 : 호흡기, 눈 보호구, 장갑 및 가운)를 착용한 의료진 → 환자의 분비물/ 배설물을 다루거나 접촉	낮음	자가 모니터링	_
⑧ 권장되는 보호구(「표3. 의료기관의 개인보호구 기준」참조)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 → 환자와 간단한 상호작용* ※ 접촉없이 환자의 병실에 입실 등			
⑨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분비물/배설물과 접촉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가지 않은 의료진	위험 없음	_	-

^{*} 마지막 잠재적 노출 후 14일까지 모니터링

¹⁾ 지정된 신체부위에 PPE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붙임 1

환경 소독 방법

1. 환경청소·소독 담당 직원

- ① (교육) 청소나 소독을 담당한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
- ② (개인보호구)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개인보호구[N95 마스크 이상의 호흡기보호구,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, 2중장갑(겉장갑은 고무장갑)] 를 착용

2. 환경청소·소독 방법

- ① 병원균의 분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 보다는 청소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함
- ② 환경 표면에 유기물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냄(cleaning)
- ③ 모든 비투과성 표면(천장과 조명 포함)은 0.1% 차아염소산나트륨(1,000ppm) 또는 이에 상당한 환경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 또는 밀걸레 등으로 철저히 닦음
- ④ 투과성 표면은 가능한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독액에 침적
- ⑤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. 단,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,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
- ⑥ 소독이 끝나면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(시간당 6회 이상 환기)를 한 후 체크리스트로 완결성 점검

3. 소독제 종류 및 사용법

-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(1000ppm 권장⁹⁾¹⁰⁾¹¹⁾, 알코올(국소 표면인 경우) 등이 포함되며,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음
 - * 환경소독은 차아염소산나트륨, 알코올, 폐놀화합물 (phenolic coumpounds), 4급암모늄화합물, 과산화물(peroxygen compounds) 등이 적절, H_2O_2 vapor, H_2O_2 dry mist 등 사용 가능*
 - * 안전을 위해 잘 훈련된 사용자에 의해 실시하며, 제조사 방침을 엄격히 준수
 -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할 경우 시중에 판매하는 락스의 농도를 확인하여 유효염소 농도를 0.1% 또는 1,000 ppm으로 희석(5% 락스 기준 20mL를 물 1,000mL에 희석)
 - ※ 소독제 사용 시 제조사의 희석배율, 접촉시간, 취급 주의사항 등 권장사항을 따름

⁹⁾ Best Practices for Environmental Cleaning in Healthcare Facilities: in Resource-Limited Settings(ver 1), 2019

¹⁰⁾ Novel coronavirus (2019-nCoV) Guidance for primary care Management of patients presenting to primary care Version 5.0, 2020, NHS

¹¹⁾ Novel coronavirus (2019-nCoV)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Updated 3 February 2020. PHE

붙임 2

의료기관 격리 시 입원치료의 방법과 절차

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1조(감염병 환자등의 관리), 동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'별표2. 자가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'

의료기관격리 시 입원치료의 방법

-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(이하 "호흡기 감염병"이라한다)을 제외한 감염 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(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. 이하 같다)에 입원시켜야 한다. 다만, 1인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.
-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시키되, 그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 다만,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,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 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.
-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한다.
-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,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.
-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,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, 손위생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하게 해야 한다.
-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,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의료기관격리 시 입원치료의 절차 등

-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은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,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-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.
-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 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.
- 입원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를 통하여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고,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,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증상은 소멸되었으나 감염력이 있는 회복기 의료기관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관리 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,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.

서식 1 시·도 대책본부 일일보고 양식(의료기관 작성용)

부서(장소)명:											
		일시	체온	(フ) オ	흐흡기증상 침/목 아픔/콧딁	물)	격리 준수여부	특이 사항			
(/)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	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	,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	,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	\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)	\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/ /	\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/ /	\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/ /	\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/ /	\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/ /	\	\	\	, ,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
(/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/ /	`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)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
, ,	\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/ /	\	□오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)	□오후	${\mathbb 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(/)		□오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
	□오후	$^{\circ}$	□없음	□있음()	□예 □아니오					